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3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안 제3조~제5조)
- 다.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기능 (안 제6조~제7조)
- 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 운영 등 (안 제8조~제9조)
- 마.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후견인제도 운영 (안 제10조~제11조)
- 바. 지도점검, 공공시설이용권 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12조~제14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 33(구포동), 전화 051-309-4092, FAX 051-309-40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내 유관 기관들 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 가정 등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 및 학교 중단의 유형별 실태 등을 조사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여가·문화 지원 사업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년도 사업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 · 관리
 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
 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보급
 6. 학교 밖 청소년 진로 및 취업 관련 정보제공 · 관리
 7.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
 8.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 지원
 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후견인제도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지도 · 점검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시설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

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③ 시설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 북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하여 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